

## 7.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### ☐ 개정이유

-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나
- 도시공원법이 법률 제5899호('99. 2. 8)로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임

### ☐ 주요골자

- 조례안의 체계정비를 위하여 전문을 개정
-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과 면적을 확대(안 제3조)
-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상을 확대(안 제3조제2항)

### ☐ 검토의견

- 공원점용허가 및 녹지점용허가의 기준·범위·기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 없으며
- 가설 건축물의 대상과 면적의 확대와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상을 확대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조문체계등도 문제점이 없음